

20.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20년 4월 9일
- 제안자 : 황순자, 김규학, 김대현, 김성태, 김재우, 박갑상, 박우근, 배지숙, 이만규, 임태상, 윤영애, 장상수, 하병문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상정일자
 -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
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년 4월 23일) :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황순자 의원)

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교통약자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- 연수기관의 업무대상을 확대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4조)

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산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학수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의무로 규정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연수기관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,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까지 확대·조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2조는 교통약자를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,
- 안 제4조에서 연수기관의 업무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외 시민 교통안전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.

- 이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연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
- 無사고·無불편·無단절의 교통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 교통시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새롭게 추가되는 시민교통안전 관련 업무와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